

인터넷상거래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영국 특허청

패트리샤 휴이트(Patricia Hewitt) 전자상거래부 장관은 3월 12일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상거래 방법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는 최근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혹은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가 허여되어야 할까?”에 관한 협의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특허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중요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 특허법은 충분히 명확하지가 않다. 명확한 법률을 위한 유럽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 영업방법은 불특허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휴이트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내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찬성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우리의 주요 원칙은 특허는 기술 혁신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기계 장치에 대한 프로그램은 특허가 가능해야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에서의 문법 교정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기술적 혁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협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인터넷 상의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다.”고 말하

였다.

소비자부 장관인 김 하우웰즈(Kim Howells) 박사는 “특허 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영업 방법 분야에서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이다.

특허법은 유럽 특허 협약 하에서 통일화되어 있다. 우리는 영국 정부의 결론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권고할 것이다.

유럽 위원회는 현재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유럽 위원회로 하여금 우리의 결론을 구체화하는 조기 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협약이 우리의 결론과 같은 태도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유럽 특허법을 명확화하게 하여 어떤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에 종지부를 찍어 주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협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하였다.

참고로, 영국 특허는 기술적 발명의 보호에만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현재의 영국법(1977년 특허법)과 유럽 특허 협약(1973년)에 의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자체와 영업방법 그 자체만은 특허보호로부터 제외된다.

이러한 제외는 수년동안 시행되어왔으나 기술 변화의 속도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특허 체제에 의문을 가져왔다.

그리고 미국의 「State Street」판결 아래로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비기술적 영업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미국의 관행은 즉각적으로 유럽의 특허

체제를 다시 점검하게 만들었다.

개정된 특허법에 의한 첫 출원 공개

미국 특허상표청

2001년 3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은 미국 특허제도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온 1999년 미국 발명가 보호법(AIPA :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에 따라서 특허출원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100년이 넘는 미국 특허 제도에 근본적인 주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공개된 출원은 그 양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 심사관에게는 중요한 참고 문헌의 보고(寶庫)이자 대중에게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니콜라스 고디시(Nicholas Godici) 상무부 차관 대리겸 USPTO 청장 대리는 말했다.

수술 장치, 화학적 공정, 그리고 영업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47건의 출원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특허출원은 USPTO 사이트(<http://www.uspto.gov/patft/index.html>)에서 이미지 혹은 텍스트로 볼 수 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출원이 공개된다. 약 3500건의 출원이 공개될 때까지 향후 18개월동안 USPTO에서 공개되는 특허출원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11월 29일에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출원에 대해서 특허출원의 공개가 요구된다. 최초 출원일(earliest filing date)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이루어진다. 최초 출원일은 외국 출원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세계의 다른 주요 특허청들은 특허출원 공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전에 미국 특허출원은 특허가 허여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개정된 특허법하에서 중요한 절차로는 발명가가 출원의 조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15일에 처음으로 공개된 출원 중에는 발명가에 요청에 의해서 공개된 출원이 한 건 있다. 이 출원은 1999년 6월에 출원된 것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자발적인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출원인은 특허 출원의 공개일과 특허 사정일 사이의 기간동안 제3자가 자신의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혹은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는 잠정적인 권리(provisional rights)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음은 1999년 미국 발명가 보호법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서의 공개 조항에 의해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5주 동안의 출원건수이다.

3월 22일 - 9건

3월 29일 - 42건

4월 5일 - 126건

4월 12일 - 66건

4월 19일 - 98건

참고로 이 수치는 발명가의 요청에 의한 자발적인 조기 공개가 있을 시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산업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특허 발표

호주 지식재산권청

2001년 4월 26일 호주 정부는 세계지식재산권

의 날을 맞이하여 호주 산업계가 중요한 혁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특허인 혁신풍화(innovation patent) 제도를 공개하였다.

비교적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특허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된 혁신풍화는 저비용으로 지재권 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호주 산업계의 필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이다.

새로운 혁신풍화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호주는 일본, 독일 및 한국과 같이 이미 이원적 특허제도(실용신안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과 같은 대열에 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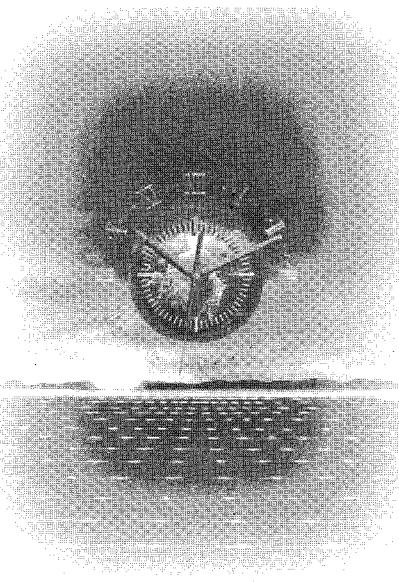
도입 배경

호주 정부는 지난 1979년에 소특허(petty patent)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국제 시장에서 선도적 혁신가로서의 호주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호주의 현재 지재권 제도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문위원회(ACIP:

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는 호주 정부에 혁신풍화를 권고하였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소특허제도를 혁신풍화제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일반인은 2001년 5월 24일부터는 소특허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혁신풍화가 발효되었다.

※ 호주 혁신풍화제와 한국의 실용신안제도 비교

	호주 혁신풍화	한국의 실용신안
심사방식	무심사등록주의 ⁽¹⁾	무심사등록주의
보호기간	8년 ⁽²⁾	10년
보호대상	일반 특허와 동일 ⁽³⁾ (물질과 방법도 포함)	물건(물품) (물질과 방법은 제외)



(1) 방식심사만 거치고 실체심사는 하지 않고 혁신풍화 허여한다. 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실체심사가 필요하다.

(2) 일반특허(standard patent)는 20년, 종래의 소특허는 6년

(3) 호주 정부가 받았던 혁신풍화의 보호대상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문위원회(ACIP)의 권고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혁신풍화의 출원은 단순한 기구, 도구, 기계 혹은 장치에 대한 것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혁신풍화는 혁신 개발 및 시장 판매에서 자연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의약품과 藥物 제품과 같은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일반 특허 제도하에서 특허가능한 어떠한 기술이나 대상을 배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나 혹은 범위를 제한하면 혁신풍화가 새로이 부상하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특허등록건수 300,000건 돌파

- 우리나라 특허제도 도입 55년만에 30만건 돌파 -

- 우리나라에서 1946년 1월 특허제도가 도입된 후 55년만인 2001년 6월 19일에 300,000번째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 이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경제 전분야에 걸쳐 널리 확산되고 있음과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발전속도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단계에 있음을 잘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강제순환식 슬러지 고농축 증발장치를 발명한 박경만씨가 영예의 300,000번째 특허권 등록 -

- 이번에 300,000번째로 특허권을 등록한 특허권자는 5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갤(반고체, 예: 두부) 형태의 슬러지(하수처리시 발생되는 침전 씨꺼기)를 고농축시켜 슬러지의 양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슬러지를 매립하는 면적과 토질, 수질 및 대기등의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강제 순환식 슬러지 고농축 증발장치』를 발명한 경기 군포시 소재 박경만(64세)씨가 300,000번째로 특허권을 등록 받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의 특허권은 3년 주기로 10만건씩 증가 -

- 또한,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록은 1947년 2월 14일 중앙공업연구소에서 출원하여 1948년

11월 20일에 등록한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발명이 최초의 특허권으로 등록되었으며

- 제1호 특허권이 등록된 후 48년만인 1996년 5월 29일에 10만건(일본 도시바의 전자식프린터), 3년후인 1999년 3월 8일에 20만건(일본 사마루만사의 골프클럽의 헤드)의 특허권 등록이 있은 이래, 다시 3년만에 30만건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10만건의 특허권이 등록되는데 48년이 걸렸으나 근년에 3년 간격으로 10만건씩 등록되는 것은 우리 기술력의 발전속도를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특허청장, 발명자 및 대리인 초청 기념 행사 개최 -

- 한편, 임내규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특허권 등록 30만건 달성을 즈음하여 발명자인 박경만씨와 박경만씨의 출원을 대리한 이선행 변리사를 대전청사로 초청하여 30만번째 특허증과 기념패를 전달하면서 그간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발명을 위해 헌신·노력한 점을 치하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우수한 발명과 출원대리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300,000호 특허등록 주요발명 내용

- 특허출원 제10-98-34430호
- 발명의 명칭 : 강제순환식 슬러지 고농축 증발장치
- 출원인, 발명자 : 박경만

〈발명의 목적〉

각종 사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기물인 슬러지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처리 과정에서 이를 건조시키거나 증발시켜 부피를 감량하여야 하나 기존의 농축장치는 처리물이 장치 내부에 놀어붙고 열효율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음

〈발명의 구성〉

본발명은 슬러지 증발장치 내부에 원반형태로 설치된 다수의 교반 날개에 스팀관을 연결시키는 구성을 통해, 슬러지를 가열시키는 동시에 혼합시켜줄 수가 있도록 함으로써 슬러지가 농축장치의 내부 벽면에 놀어붙지 않고 열교환이 빨리 일어나 짧은 시간에 높은 농축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장치임

〈발명의 효과〉

산업폐기물인 슬러지를 고농축시켜서 폐기되는 슬러지의 양과 부피를 최소화시킴으로써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용어(슬러지: sludge)

수중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진흙상으로 된 것으로서 슬러지에는 다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고 취급이 어려우므로 모래여과, 필터프레스, 진공여과기 등으로 처리하여 보다 수분이 적은 슬러지 케이크로 만듬. 이 케이크는 물거나 콘크리이트 굳힘 또는 소각시켜 바다에 버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이용할 수 밖에 없음.

- 『상표법조약』과『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기입을 위한 내용과,
- 현행 상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상표제도가 대폭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된 상표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년중 기입예정인『상표법조약』의 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서상 불필요한 법인의 대표자 명칭이나 제출연월일 등의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등록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 내년도 기입예정인『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규정을 국내 상표법에 반영하기 위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출원을 국내 특허청을 통한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현행의 상표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의 등록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 상표등록전의 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경고를 하여 출원인이 입은 업무상의 손실을 보상받도록 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등록료를 추가납



**상
표제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 부하여 상표등록출원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출원인이 등록료나 수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과오납 통지를 반드시 하고 출원인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오납된 등록료나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정하였다.
- o 개정상표법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 외에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재강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기회의 확대, 상표권 침해시 상표권자의 손해액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한 손해액 추정규정의 신설, 상표등록후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국제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된다.
- *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 상표출원·등록절차, 각종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는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관장 조약
 -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하나의 절차로 복수의 의정서 가입국에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는 WIPO 관장 조약



특허·실용신안제도 2001. 7. 1부터 대폭 달라져...

- o 특허청에서는 2001. 7. 1.부터 개정된 특허·실용신안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출원의 보정 및 심판제도가 대폭 달라지게 된다.

-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지난 2월 3일 개정특허법·실용신안법을 공포한 바 있고, 그 동안 7월 1일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 o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심사·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하고 기술 및 심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허·실용신안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o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특§ 29②, 특령§1조의2)
- 보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자진보정기간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등본 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 47①),
- 종전의 요지변경 조항을 폐지하고, 보정의 허용범위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다.(특§ 47②)
-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관련하여서는
 -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등록료 미납부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후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 § 81의2),

-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 § 128①),
-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다.(특 § 225)

- 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폐지하고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은 거절 결정 불복심판에서 다룰 수 있게 하였고(특 § 132의4 폐지),
- 특허무효심판의 계류 중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대신 무효 심판 중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특 § 133의 2),
- 법원 및 심판원에 동 소송 또는 심판이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였다(특 § 164③ ④).

-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 2001. 7. 1. 이후 일본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특 § 54④, 특규칙 § 25, 고시 § 제2001-3호),

-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였고(특규칙 § 8),

- 출원 서식 중 대표자의 성명, 제출연월일 등 불필요한 기재요건을 삭제하였다.

- PCT 출원과 관련하여

- 국제출원의 출원언어를 현행의 국어 또는 영어에 일어를 추가하여
- 일어로 작성된 PCT 출원도 수리하여, 일본 특허청을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규칙 § 91),

- 이중출원제도와 관련하여

-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였다.(실 § 10, 실령 § 3)



전자 특허 출원 55%가 외국인 ... 을 284件중 159件 차지

국내에서 출원되고 있는 유전자 특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생물산업의 핵심기반인 유전자 특허 분야에서 외국인 선점이 우려된다며 연구개발지원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99년초부터 2001년 4월까지 유전자 특허와 관련해 국내에 출원된 건수는 모두 1천3백16건이며 이 가운데 60.2%인 7백92건이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출원된 유전자관련 특허건수는 2백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백89건)에 비해 50%가량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은 50%가 넘는 1백59건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외국인 출원 특허의 경우 새로운 유

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특허가 많은 등 주로 원천기술과 관련돼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원천기술을 응용한 용도·방법 특허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특허내용면에서도 외국에 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된 이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유전자 특허권 확보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생명공학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선진국에의 기술예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특허권 부재에 따른 로열티 등으로 인해 엄청난 외화유출을 우려하기도 한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게놈프로젝트는 미생물, 작물, 가축 등 유용생물자원의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중국 브라질 등 후발 국가들도 모두 게놈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며 “제약, 보건의료, 화학, 농업, 식품, 환경산업의 혁명을 주도할 생물산업 분야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경제



협 “저작권법개정안 과잉보호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창작성 없는’ 편집문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치는 미국, 일본에서도 입법화하지 않고 있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비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협은 법무부 요청으로 작성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저작권의 범위와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편집물 제작자 권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제한’ 등에 대해 이용자와 제작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상 데이터베이스는 내용물이 시시각각 바뀌는 특성을 감안할 때 언제부터 저작물로 볼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이버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등급제 표시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자율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 미, 자재권·철강 통상현안 논의

미국은 한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할 때 미국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반영해 주고 의약품의 한국 시장접근이 더욱 쉬워지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외교부 회의 실에서 열린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한국 정부가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유통을 지속 적이고 투명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데이터베이스(DB)를 저작물로 인정,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중인 저작권법 개정 때 한국이 자신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향후 상반기 단속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상시 단속을 포함한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

명하고 저작권법의 경우 양국간의 사정이 달라 수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의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요청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뉴라운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의약품 문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약개발을 승인할 때 미리 특허청에 의뢰해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해 주고 시판 승인 과정 등에서 제출한 신약정보를 정부가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름제거나 표백, 선텐 기능에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허가와 관련, 한국산에 비해 외국산 제품의 허가율이 턱 없이 낮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산업은행의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채 인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은 구조조정을 돋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에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교수의 직무상 발명을 국고에 귀속시키면서도 응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어 국립대 교수의 특허권 등록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국립대학은 직접 특허권을 갖고 사업화가 가능한데다 수익금을 학교, 연구실, 발명자간에 고루 배분하고 있어 특허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국립대학교내 별도법인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 마련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또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형성을 위해 유한회사를 지식회사로 키워야 한다며 7월초 개국하는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www.itstv.co.kr)을 기술혁신형 유한회사의 성공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장홍순 벤처기업협회장, 이장무 서울대 공대학장, 박호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 산학연 기술정책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국립대학 특허권 부여 검토”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학의 산업기술개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무역협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특허관련 법률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정위, 유사 도메인 서비스업체에 철퇴 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 도메인들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도메인 유사 서비스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공정위가 음성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유사 도메인 서비스 업체들이

선점을 막기 위해선 기업들이 등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 ‘유사 도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실사작업을 한 뒤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음성만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너(대표 차정만 www.voicenic.co.kr)에 대해 ‘도메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보이스너의 경우 도메인이 아니면서 도메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등록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식 도메인 네임이라면 DNS(Domain Name System)을 통해 IP주소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워딩 내지 매핑에 불과 한 서비스를 도메인이라고 부르며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이스너이 우선 조사대상이지만 앞으로 유사 도메인 서비스 업체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혀 그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도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고 유사 편법 서비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직권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너은 현재 유료 등록건수가 1만 2천 건에 이르고 있으며 등록비는 초 기 1년 사용에 계층형의 경우 9만 9천원, 키워드의 경우 49만 5천 원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반면, 가격은 일반 도메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 독점 이익을 취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또 음성에서 co.kr과 com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도 별도로 등록받았으며 이후에는 키워드 서비스까지 거액의 등록비를 받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술 개발 이전에 등록부터 받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음성인식에 관한 원천기술 없이 등록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사용 가능성 여부를 구현해보지도 않고 단지 아이디어만으로 등록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비와 함께 ‘깐깐한’ 환불 정책도 서비스 이용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보이스너 측은 등록 후 1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도메인업체 사장은 “도메인 이름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유사 서비스가 남발하면서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록하는 상황”이라며 “도메인 용어 남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메인 전문가인 A씨는 “별다른 기술력이 아닌데도 도메인으로 포장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DSP(도메인서비스 실무자들의 모임) 협의회에서도 유사 도메인 편법서비스에 대한 자정노력에 대해 집중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한국 도메인 시장의 빗나간 등록 열기를 등에 업은 일종의 상술”이라며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어 도메인, 숫자 도메인, 도메인 주소재지 정 등도 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news24

**한국, 지난해 美 특허청 특허
건수 5.6% 감소 ...**

한국이 지난해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받은 특허건수가 99년보다 5.6% 감소, 주요 경쟁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작년 미 특허청의 특허 발부 건수는 17만6천87건으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지만 한국기업의 특허취득은 3천4백72건으로 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전체 특허취득 건수에서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2.2%에서 2%로 낮아졌다. 순위도 6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미국내 외국인 특허취득 건수를 보면 일본이 3만2천9백24건으로 미국내 전체 특허의 18.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독일이 1만8백22건으로 2위, 대만이 5천8백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만의 특허 취득건수는 전년에 비해 28.3%나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프랑스 4천1백73건 >영국 4천90건 <캐나다 3천9백25건 등의 순이었다.

개별 기업별로는 IBM이 2천8백8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취득했고 NEC(2천20건)와 캐논(1천8백90건)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총 1천4백41건의 특허를 따내 99년에 이어 4위를 지켰으나 특허건수는 6.7% 줄었다.

특허 취득 10대기업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이 5개사, 미국 4개사, 한국 1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한국경제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전자책 사업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용) 주최로 열린 저작권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성호 변호사는 “전자책의 ‘전자출판’은 저작권법상의 출판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들간의 약정으로도 설정출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에 전자적 출판이나 디지털 출판의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 54조 제 1항에 의하면 출판의 개념을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文書) 또는 도화(圖畫)로 발행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법적 개념인 문서나 도화는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모니터상으로 보여지는 전자 출판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자 출판 업자들은 저작권자와 계약시 기준 출판자들이 가졌던 설정출판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설정출판권이란 저작권자가 출판자에게 준물권적인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권리 침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박 변호사는 “전자책 출판과 관련해 당사자들 간에 계약에 의해 임의로 설정 출판을 부여하는 행위도 결국 법이 허용하지 않는 준물권을 창설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며 “전자 출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정출판권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왔던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전자책은 저작권법상에 독립된 용어 정의도 안돼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법적 보호 역시 미흡하다”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정 추진중인 저작권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

“**자책 발전 위해 저작권법 정비 시급**”

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문환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에서 약 100여명의 참석했다.

출처 inews24

내 대학 특허출원 전체의 2.7%에 그쳐

국내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의 46%가 몰려 있는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가 국내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재단 정현희(지식확산팀장) 박사는 과학재단 소식지 6월호에 기고한 '기초연구 특허 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이란 논문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는 2만3천425건으로 국내 전체 특허출원 건수 79만1천114건의 3.5%에 불과했다.

대학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천

75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 1천666건, 포항공대 794건, 호서대 761건, 한양대 715건, 연세대 694건, 경북대 618건, 충남대 577건, 부산대 523건, 인하대 479건, 고려대 464건 등의 순이며, 국내 237개 대학 중 9.7%인 23개 대학이 대학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절반이 넘는 56.2%(2만3천425건 중 1만3천173건)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82년 개교한 충남 아산시 호서대와 지난 98년 3월 문을 연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가 각각 4위, 14위(396건)를 차지, 연구개발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분석됐다.

정 박사는 "최근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초 연구의 중심인 대학의 특허출원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학의 특허출원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구 결과를 특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발명 건수가 많은 대학이나 교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내에 특허 관리 업무를 맡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